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계획 등 수립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포함〉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46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46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4. 21.
- (3) 회 부 일 : 2026. 4.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현장에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높은 위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5. (생략) <u><신설></u> 16. (생략) ④ ~ ⑦ (생략)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5. (현행과 같음) 16. <u>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u>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7조¹⁾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정신건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을, 시·도지사는 국가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면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이하 ‘국가계획 등’이라 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 관련 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²⁾ 종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시설에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
4.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우울·불안·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14. 재난 심리지원
 15.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국가계획에 한정한다)
 1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 ⑦ (생략)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현장 업무를 수행³⁾하고 있음.

이러한 업무 환경에서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제공이 위축되어 정신건강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은 개별 시설의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종사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과 책임을 제고하고,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6년 3월 27일 발표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치료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환자 및 종사자의 보호, 안전한 생활지원 등을 위한 인력 배치기준’ 신설을 계획⁴⁾하고 있음.

3)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위험 노출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정신과 병동 간호사 10명 중 9명은 언어적 폭력을, 4명 중 3명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하고, 정신의료기관 보호사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뺨을 맞거나 깨물리기도 하는 등의 고충을 호소했으며, 성희롱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정신병동에 진짜 아침이 올까요...” 폭언, 괴롭힘 시달리는 의료종사자들, 한국일보, 2024. 1. 5.,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4010315220003321?did=NA>), 정신질환자가 어느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보호사를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정신병원 60대 보호사 폭행해 숨지게 한 환자, 징역 16년’, 동아일보, 2026. 2. 13.,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213/133364175/2>)이나 진료상담 중인 환자가 휘두른 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사망한 사건(‘진료중 참변 故 임세원 교수 5주기 “정신병동에 아침 오려면...”’, 연합뉴스, 2023. 12. 31., <https://www.yna.co.kr/view/AKR20231230043200004?input=1195m>)이 발생한 적이 있음.

4)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p. 73., 관계부처 합동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참고로 정신건강 증진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은 관리안내 지침이나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을 통하여, 정신의료기관은 평가 또는 인증제를 통하여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종사자도 보호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8